

시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rality of the Market

박 상 수*

(Park, Sang-Soo)

목 차

- I. 서론
- II. 시장의 도덕성을 보는 관점
- III. 공정한 게임을 위한 정책
- IV. 이윤의 도덕성
- V. 결론

I. 서론

시장은 도덕적인가? 사실 이 문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이며,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견해가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 논문은 시장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시장경제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편으로 시장과정의 도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검토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공정한 규칙의 제정과 개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정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본주의 시장의 도덕성이, 시장과정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시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윤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하였는데, 이윤 역시 완전히 도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우선 II에서는 시장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관점, 즉 행동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및 의무론의 관점들을 중심으로 도덕성이 평가되는 기준을 간략히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았다. III에서는 특히 의무론에 입각하여 공정한 게임, 즉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공정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도 검토해 보았다. IV에서는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 이윤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를 기여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II. 시장의 도덕성을 보는 관점

시장의 도덕성을 보는 관점은 크게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고, 공리주의적 관점도 행동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결과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는가에서 견해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2.1 행동공리주의

훨(Hume, D.), 벤담(Bentham, J.), 밀(J. S. Mill)에 의해 제창되고 확립된 사상이 공리주의이다. 그들에 따르면 도덕은 이 세계에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가져오게 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벤담은 하나의 궁극적인 도덕원리, 즉 '유용성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논술하면서, 유용성의 원리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성에 따라, 환언하면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모든 행동을 시인하거나 비난하는 원리"라고 정의하였다.

벤담과 존 슈트워트 밀이 주장했던 고전적인 공리주의는 두 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행위들은 오직 그 결과에 의해서만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하며, 둘째, 결과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들에 의해 생겨날 행복과 불행의 양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옳은 행위란 최대의 선(good)을 낳게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그리고 최대의 선은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통상적으로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의 목적을 최대의 행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법과 정치 등의 제도 개혁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들은 결과만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행위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항상 묻는다. 그 행위의 결과가 공정했다면, 즉 최대의 행복을 발생시켰다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 된다.

만약 그 행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최대의 행복을 발생시켰다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행동이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우리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act-utilitarianism)라고 부른다.

2.2 규칙공리주의

최근에 결과만을 중시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반발하여, 유용성의 원리에 따르는 규칙들을 세우고 개별 행동들이 이 규칙들에 준해서 옳고 그름이 판별되도록 하는 공리주의가 제시되었다. 이런 공리주의를 규칙 공리주의(rule-utilitarianism)라고 부른다.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의 일반 규칙들이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다. 일반 규칙들이 잘 만들어지고 그 규칙들이 준수된다면, 그 행동들은 결과를 불문하고 옳은 행동들이라고 판단한다.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규칙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유용성의 원리에 호소한다. 그리고 일단 규칙들이 만들어지면 개별 행동들은 유용성의 원리에 호소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 행동들을 규칙에 호소함으로써 그 행동들이 옳은지를 평가한다.

2.3 행동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비교

윤리학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시장이 도덕적인가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각각의 기준은 시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정책도 전혀 다르게 제시한다.

우선 규칙 공리주의는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결과가 어떻든 공정하다고 판단한다. 예컨대 시장의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여도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오로지 시장과정이 공정하였는지를 묻는다.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없었다면, 시장의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도 그 결과는 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시장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시장의 결과가 어떠한 시장에서의 행동들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규칙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시장과정이 불공정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그들은 시장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들의 개정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법치주의이며,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공정한 게임을 유지시키는 규칙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 전의 규칙들을 변경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완벽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규칙들의 발견은 정말로 어려운 난제이다.

한편 행위 공리주의는 행동의 결과가 최대의 행복을 낳는다면 그 행동은 옳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최대의 행복을 낳지 못한다면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간섭해야 한다는 정책적 권고가 제시된다.

시장의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자. 행위 공리주의자들은 시장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장의 결과에 간섭하고자 할 것이며, 이들은 여러 정책 수단에 의해서 부와 소득의 분배를 시정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물론 정부간섭은 규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이다.

2.4 의무론

시장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제3의 기준이 존재한다.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으로 정형화된 칸트(Kant, I.)의 의무론(deontology)이다. 정언명령은 우리가 행동할 때 누구나 따라야 할 무조건적이며 보편 타당성 있는 지상명령이며, 여기서 보편적이면서 필연적인 도덕법칙이 유도된다.

정언명령은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동할 경우 우리는 언제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규칙에 의거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격률을 보편화하기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리라는 것이다. 환언하면 우리가 자신의 규칙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이에 의해 행동화할 때 비록 우리 자신이 우연히 그 행위를 당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게 되리라는 것이다.

셋째,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의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은 우리가 관련된 격률이나 규칙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천되기를 일관성 있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일관성 있게 요구할 수 없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다.

문제는 정언명령에 합당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기를 보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다. 그렇지만 칸트의 주장은 시장의 도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의 결과가 좋은가와는 전혀 상관없다.

2.5 규칙공리주의와 의무론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을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의무론적 윤리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규칙 준수가 최대의 행복을 낳는다는 유용성의 원리를 주장한다는 관점에서 의무론적 공리주의이다. 반면에 의무론은 규칙의 준수가 최대의 행복을 낳는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단지 보편적인 의무로서 규칙을 준수해야만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시장의 도덕성을 의무론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시장에서 올바른 규칙이 잘 정립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규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판단함으로써 시장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법치 혹은 법의 지배라는 법사상이 윤리학에 응용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장에서도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법의 확립과 그런 법의 실행이 시장의 도덕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III.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위한 정책

여기선 시장의 도덕성을 의무론적 관점에서 공정한 게임으로 정의하고, 이런 게임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이하의 논의는 Hayek, F. A.(1960, pp.220-33)의 주장을 많이 참조하였다.)

3.1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의 원칙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임 규칙의 존재는 바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완전한 게임 규칙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발견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기심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선 정부의 활동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하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인적 영역에 간여할 수 있으며, 정부 간섭의 핵심적 신념은 정상적인 개인의 기대가 좌절됨으로써 나타나는 손해보다는 공공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사적 영역에 대한 불가피한 침해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보상 없이 물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은 개인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침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런 개인적 영역에 대한 침해가 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가능한 한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개인적 자유는 법률 하의 자유를 의미한다. 아담 스미스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정부 간섭에 반대했던 것은 개인적 영역의 침해를 되도록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스미스는 이기심을 강조하면서 이기심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체제는 개인적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는 체제라고 생각했다. 물론 정부가 어떤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의 몇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활동들도 있다. 만약 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양립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 이상의 활동도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간섭의 원칙은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부 활동들만이 시장에 간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2 합법적인 정부 활동

시장경제에 간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 활동은 정부의 강제적인 활동과 서비스 활동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합법적인”의 의미는 법치에 합당하다는 것이며 실정법에 합당하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물론 합법적인 활동이 정확히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치의 원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활동들이 포함될 것이다.

정부의 강제적인 활동들은 개인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활동들이다. 도둑질, 살인, 강도, 사기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해선 정부의 합법적인 강제가 적용된다. 이런 강제의 합법성은 개인의 그런 활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피해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이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사적 해의 원리라고 한다.

또한 탈세, 밀수, 법정모독 등과 같은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를 행사한다. 이것은 이런 활동의 자유가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공적인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공적 해의 원리라고 한다(Feinberg, J., 1973, pp.41-2 참조).

그 외에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도 정부의 강제적인 활동이다. 예컨대 정부가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발휘할 때 혹은 토지의 사용이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해를 가할 때, 정부의 강제가 필요하지만 이때의 강제는 반드시 합법적(법치 관점에서)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합법성 여부는 토지의 수용권 발휘로부터 결과하는 이득(예컨대 도로 건설시의 이득)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보상하고도 남느냐, 혹은 토지의 사용에 대한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이웃 토지 소유자의 이득이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소유자의 침해를 보상하고도 남느냐에 의존한다. 정부의 이런 강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활동들이다.

반면에 정부의 서비스 활동은 개인적 영역에 침해를 거의 가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다. 최근에 이런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국민들이 활동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지식의 획득을 촉진시키는 활동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은 안정적인 화폐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케인즈(Keynes, J. M., 1919)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화폐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만큼 기존의 사회기반을 뒤엎는 보다 교묘하고 또한 보다 확실한 수단은 없다. 그 과정은 파괴 측면에서 경제법칙의 모든 은폐된 힘들을 사용하며,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진단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한다”.(p.149) 케인즈의 이 주장은, 화폐제도의 불안정성을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이 독일 사회를 와해시키고 나중에는 나치즘을 탄생시킴으로써 현실로 드러난다.

하이에크는 인플레이션의 이런 해악을 특별히 강조한다. 인플레이션은 손쉽게 발생시킬 수 있고 어쩌면 바람직한 효과도 적지 않지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야만 기존에 얻었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욱 불행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중단은 국민들이 인내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발생시키므로 그 중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이에크(1960)는 “사실상 종종 비유되는 인플레이션과 마약복용 사이에는 단순한 피상적 유사성 이상의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p.330)

화폐제도를 안정시키는 것 외에도 도량형의 기준제공, 토지 등기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교

육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 모두는 개개인이 의사 결정할 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화폐제도가 문란하거나 불안정하였을 때에는 시장가격 자체가 정보전달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자원배분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기본인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정부의 서비스 활동으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만 개별적인 수익자에게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공급하기가 곤란한 서비스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컨대 공공보전, 도로와 항만 등의 건설과 유지, 국방과 치안 등이 여기에 속한다.

3.3 배제되는 정부 활동

시장과 관련하여 법치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수단은 누가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어떤 가격에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다. 소위 직업과 직종, 판매조건 및 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직업의 선택과 관련하여 우리는 약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즉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할 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의사면허증을 가져야 하거나 식당을 경영할 경우에는 일정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자격요건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사기와 기만을 금지하는 일반법칙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의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진료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기행위일 것이며, 위생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식당을 경영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을 위생 면에서 위협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이 대중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우리의 법치에 위배되지 않는다. 환언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사기행위이다. 문제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에 따라 상이한 규칙이 제정될 것이다. 예컨대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해선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만, 커피 전문점을 경영할 경우에는 매우 완화된 자격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정책수단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이다. 이런 가격통제가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장기적인 규칙에 따라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은 생산의 효율을 성취하는 데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균형가격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장가격도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가격을 결정

하는 행위는 대단히 경직적이며,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 위임해야 한다.

둘째로 가격통제가 효율적이 되려면 누가 판매하고 누가 구매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대단히 재량적이면서 자의적이다. 이런 결정은 행정 당국이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정이 된다. 특히 공급자가 무한히 많은 그런 제품에 대해선 이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이런 가격통제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할 것이다. 시장은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가격을 변경시키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가격통제는 가격의 변동을 방해하므로 시장의 원활한 조정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런 가격통제는 수량통제, 즉 어느 정도의 양을 사람 혹은 기업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당기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수량통제는 필연적으로 재량적이며, 준칙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해당기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Hayek, F. A., 1960, p.228)

3.4 공정한 규칙의 제정

정부의 합법적인 활동과 배제되어야 할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공정한 게임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규칙은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들을 규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규칙들은 사실상 자연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자연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다.

스미스(Smith, A., 1759)는 “모든 실정법은 자연법률체계에 대한 다소간 불완전한 지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p.340)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다양한 권리(이런 권리를 자연권에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고 우연권adventitious rights이라 하였다)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법원은 그런 권리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필요하게 되었다.(Cairns, J. W., 1994, pp.40-5)

“중요한 것은 법원이, 불문법의 형태이든 입법의 형태이든, 자연법률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ibid., p.45) 문제는 소위 자연법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있는데, 인간이 만든 법률, 즉 실정법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입법자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지만, 특히 부자나 권력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정의의 원리는 불문법의 형성을 통해서 아마도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며, 이런 규칙 하에서 공정한 경쟁이 시장에서 이루어

지길 기대했던 것 같다.

어떻든 우리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정한 규칙은 가치판단으로서 공정하다는 의미보다는 아마도 규칙을 만드는 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불편부당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규칙은 차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므로 이 규칙이 장래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도박의 규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예컨대 주사위 놀음에서 홀수가 나오면 1만원을 받고, 짝수가 나오면 1만원을 주기로 약속한다면, 이 규칙은 놀음의 당사자끼리의 약속이며 1만원을 주고받는 것은 정당하고 100만원을 주고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사위를 던질 때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부당한 조건에서 약속한 것이며 당사자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규칙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규칙의 제정조건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물질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동일하여야 정말로 공정한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부존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전혀 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규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주사위 놀음에서 짝수가 잘 나오게 되었다면 짝수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8천 원만 받겠다고 하고, 홀수에선 1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고객을 더 많이 끌어 모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규칙의 제정에서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부존자원은 동일하지 않으며, 부존자원의 불평등은 특히 부자들이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규칙들의 경우 예상되는 결과들이 알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자나 이익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규칙 제정이나 개정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더 많이 얻으려 노력한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특정집단들에게는 이득이 돌아가고, 다른 집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뷰케넨 같은 계약론자들은 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면서 근간을 이루는 규칙들은 아예 헌법에 명시하여 이익집단들이 함부로 개정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뷰케넨(Buchanan, J. M., 1983)은 “통상적인 정치적 장치에 대한 불신은, 적어도 상당한 정도까지, 통상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순수한 헌법적 규칙에 의지할 것을 제안한다”(p.83)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와 관련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항목들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만으로는 공정성을 기하기가 대단히 어렵

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육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IV. 이윤의 도덕성

이윤의 정당성은 이데올로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이윤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면서 이윤의 부도덕성을 선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고 한다. 반면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은 이윤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시장과 자본주의도 도덕적이라고 강력하게 옹호한다.

4.1 사회주의자의 견해

19세기 초반 이후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을 이용하여 자본가착취이론을 개발한 경제학자들을 리카도파 사회주의자라고 한다. 이들의 독창성은 최초의 자본가착취이론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현재)노동만이 부(富)의 유일한 원천이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것에 투입된 노동시간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은 그 자체가 상품이다”라는 세 가지 명제로부터 자본가착취의 필연성을 유도하였다.(Burkitt, B., 1984, p.20)

“노동자들은 그들의 생산물의 노동가치와 그 생산물에 투입된 작업량의 노동가치간의 차이를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강탈당한다. 그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소득,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구성하며, 그것의 크기는 착취의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런 차이의 존재는 사기 혹은 강탈에 기인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인 논리에 기인한다”.(ibid., p.20)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상품의 교환은 잉여가치를 발생시키는데, 구매자는 그 상품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며, 판매자는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 거래의 두 당사자에 의해 창조된 잉여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나누어 가진다. 이 때 잉여가치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하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없지만, 완전경쟁시장이라면 두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논리는 다르게 전개된다. “한 노동자가 노동을 하거나 혹은 굶어야 할 때, 잠재적인 고용주가 어떤 수요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노동자는 임금에 대한 교섭에 있어서 열악한 위치에 있게 된다”.(Cowan, R. and Rizzo, M. J., 1995, p.12) 즉 독점력이 발휘되는 시장에서는 독점력을 가진 경제주체가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의 잉여를 거의 모두 흡수하고, 추

가적으로 그 경제주체가 가져가야 할 몫까지 흡수한다. 이것이 소위 자본가착취인 것이다.

자본가착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 그리고 노동자들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가가 생존기금(생산에서 소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독점하기 때문이다.(Burkitt, B., 1984, p.25)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노동하지 않으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시장교환에서 우위에 있게 되며, 임금계약을 할 때 부등가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언하면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임금계약을 할 때 자본가는 우위에서 노동자는 열위에서 계약하며 그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리카도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시장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자본가착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런 불공정의 해소는 생산수단의 공유화, 자본가계급의 폐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ibid., pp.25-6)

이런 리카도파 사회주의자들의 자본가착취이론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로 승계되었으며, 그 외의 다른 사회주의자들, 예컨대 페이비언, 신디칼리즘 등도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부도덕성을 자본가착취이론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윤이 불로소득이며, 자본가가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고 있으므로 이윤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착취와 관련하여, “자본 소유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면 착취가 존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착취가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는 자본 소유의 초기 분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의존한다. 초기 분배가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 때 나타나는 착취(와 그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는 부도덕하다고 할 것이다”.(Cowan, R. and Rizzo, M. J., 1995, pp.13-4)

이 논제는 이윤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원초적 자본축적이 도덕적인가 그리고 추가적 축적이 역시 도덕적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우선 원초적 축적에 대해선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본가의 우수한 능력, 근면, 절약 등이 최초의 자본 형성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원초적 축적은 도덕적으로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Burkitt, B., 1984, pp.48-9 참조)

반면에 추가적 축적에 대해선 마르크스의 견해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최저액이 적을 때에는 절약에 의한 개개인의 저축이 원초적 축적을 위해선 긴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축적의 원천이 대부분 기존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인 경우에 그런 개개인의 저축은 추가적 축적에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난다. 자본을 소유하고 이윤을 수령하는 사람들만이 넉넉하게 저축할 수 있다”.(ibid., p.49)

1) 노동자들만이 그 생산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리카도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비록 근면에서 기원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단 운영되기 시작하면 본질적으로 착취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그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추가적 축적의 재원인 이윤이 정말 착취적인가 이다. 즉 이윤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가 이다. 만약 이윤이 부도덕하다면 이윤을 발생시키는 시장은 부도덕하며, 그 결과 자본주의도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다.

4.2 정통학파

사회주의자들이 이윤의 부도덕성을 주장할 때 정통학파는 이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이윤의 부도덕성에 대한 반론이며, 이윤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 견해로 축약될 수 있다.(Shand, A. H., 1984, pp.79-80을 참조하시오)

첫째로 이윤을 '잔여'(residual)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다른 생산요소들에 대한 보수, 즉 임금, 이자, 지대 등은 가격의 성격을 갖지만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들을 공제한 이후에 남는 잔여이다.(물론 정상이윤은 가격의 성질을 갖지만) 이런 견해는 특히 신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요소들은 계약의 기초 위에서 고용되지만, 기업가는 잔여소득을 수령한다". 이런 '잔여'개념으로서의 이윤은 이윤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선 적절한 해답을 제공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둘째로 이윤을 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이윤은 혁신자,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항상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의 보수이다. 그런 혁신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자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미리 예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유형의 이론은 슈페터(Schumpeter, J. A.)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혁신의 성공은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할 때까지 즉시 독점으로 귀결한다. 즉 이런 혁신의 성공이 독점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혁신은 신물질의 발견, 새로운 공정의 개발, 새로운 판로의 발견, 새로운 원자재의 발견 등과 같은 이윤을 창출시키는 모든 활동들을 지칭한다.

기업가가 이런 혁신에 성공한다면 이윤이라는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혁신에 실패한다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도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윤이 불로소득이고 자본가가 노동자의 몫을 강탈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셋째로 이윤은 위험부담에 대한 보수라는 견해로 나이트(Knight, F. H.)와 관련된다. 위험은 발생할 사건들과 그 확률들이 알려진 세계를 지칭하며, 반면에 불확실성(협의적으로)은 발생할

사건들과 그 확률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말한다.

위험들이 공동으로 부담되거나 혹은 특별한 기업, 예컨대 보험회사가 그런 위험들을 대신 떠맡는다면, 이윤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험에 부적합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기업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기업가에게 이런 위험 혹은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위험 혹은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가가 정확히 예상을 했다면 이윤을 얻게 되지만, 물론 기업가가 예상을 잘못했다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윤은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4.3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

4.3.1 이윤의 본질

이윤은 미제스에 따르면 미래의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결과한다. 이윤의 궁극적인 원천은 기업가들이 미래의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기업가들이 미래의 시장상황을 정확히 예측한다면 이윤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미제스적 관점에서 이윤의 원천은 다른 사람들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때 우월한 기업가가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는 데서 발생한다.

커즈너(Kirzner, I. M., 1995)는 자신들의 이론을 “이윤에 관한 중재이론”(arbitrage theory of profit)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론은 이윤이 단순히 오늘의 시장(이 시장에서는 소위 생산요소의 서비스가 판매되고 구매된다)과 내일의 시장(이 시장에서는 이런 생산요소 서비스의 생산물이 판매될 것이다), 두 시장간의 가격차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p.37) 그렇게 부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시장가격이 (이자비용을 고려한 이후에) 내일의 시장에서 시현될 더 높은 참된 가격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중재의 기회가 발생한다”(p.37)고 하였다.

미제스의 견해를 이어받은 커즈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기민성에서 이윤의 원천을 찾고 있다. 즉 이런 기회를 기민하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고 그에 따른 정확한 예견과 판단으로부터 이윤이 발생하며, 반면에 열등한 예견과 판단으로부터는 손실이 유발된다.(High, J., 1982, p.167)

커즈너의 이윤은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잔여개념으로 볼 것인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는 이윤을 요소소득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 기업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기업가들은, 노동이나 자본처럼, 고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은 어떤 가격도 가질 수 없다. 즉 시장이 존재하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면 기업가정신은 생산요소가 아니다.

4.3.2 슈페터, 나이트와의 비교

이윤에 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를 슈페터와 나이트의 견해와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공통적인 견해는 어느 견해도 모두가 이윤이 불균형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균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며, 불균형에서만 이윤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미제스와 커즈너는 “오늘의 시장이 미래의 생산물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우월한 기업가의 능력”(Kirzner, I. M., 1995, p.37)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의 시장에서 생산요소의 서비스가 어느 상품생산에서 저평가되고 있는가에 관한 기업가의 “우월한 인식능력”이 이윤을 설명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슈페터의 혁신이론은 혁신의 결과가 바로 이윤이라고 본다. 따라서 슈페터는 새로운 생산과정을 창조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가의 “리더쉽과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슈페터는 기업가를 신상품의 도입에 의한 기존 기업 혹은 생산설비의 창조적 파괴자로, 불균형의 창조자로, 그리고 독점의 창조자로 간주한다.

반면에 커즈너의 기업가는 파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기업가는 균형을 파괴하기보다는 균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가가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만약 외생적인 변화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균형으로 수렴할 것이며, 기업가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다.

나이트는 기업가 입장에서 설명 불가능한 불확실성에 노출된 기업가에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을 때 이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설명 불가능한 불확실성에 노출된 이후에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다행스런 변화가 특정한 기업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기업가는 이윤을 얻는다. 즉 이윤은 위험과 불확실성 부담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제스와 커즈너도 이윤의 기회를 창조하는 데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모든 기업가가 시장의 미래상태를 정확히 예견한다면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른 기업가에 비해 특정 기업가가 미래 시장에 대한 우월한 인식능력 혹은 우월한 비전이 이윤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보았다. 반면에 나이트에게는 행운이 이윤의 창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ibid., p.38)

4.3.3 이윤의 도덕성

이윤의 도덕성을 평가함에는 일반적으로, 노력(혹은 기여)과 벼락이익, 두 가지 관점에서 언급될 수 있다. 예컨대 임금은 노동력이란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수로서, 즉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벼락이익이 발생한다면, 예컨대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를 위에 하늘에서 가치 있는 물건이 떨어졌다면, 그것의 소유는 단지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소유에 대한 정당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득은, 행운과 노력, 두 가지 요인이 혼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제스와 커즈너의 이윤은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기업가의 우월한 인지능력, 소위 기민성(alertness)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커즈너(Kirzner, I. M., 1995)는 “이런 기회의 발견자가, 그가 발견한 것을 의도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기민하게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p.40)고 주장하면서, 발견자-소유자(finders-keepers)의 윤리를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나 기업가의 기민성은 어떤 발견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을 이윤이 기업가의 기민성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 즉 만약 기업가가 현재 시장과 미래 시장간의 가격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의 기민성은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대상물의 발견자는, 적절한 관점에서, 그의 개인적인 기민성 덕택에 무에서 그 대상물을 창조하였다.”(ibid., p.41)

따라서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기업가의 기민성은 벼락이익과는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윤리적 정당성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시장과 미래 시장간의 가격차이를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지식이 축적됨으로써 기업가의 기민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런 기민성의 향상은 현실적으로 예상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기민성은 또한 노력이라는 윤리적 정당성을 함축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여건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가가 이윤을 발생시켰다고 하였을 때, 그런 이윤 전부가 기업가의 기민성과 관련된 노력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기업가의 예상은 틀렸지만 여건의 변화가 그 기업가로 하여금 이윤을 발생시키게 만들었다면 그 이윤은 대부분 운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가격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업가의 우월한 능력으로부터 이윤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 이윤은 현실적으로 운도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행운이 이윤의 발생을 전부 결정한다면 이윤의 도덕적 정당성은 많이 축소될 것이다. 그

렇지만 이 때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위험부담 혹은 불확실성 부담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운이 특정한 기업가에게 작용함으로써 이윤을 얻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기업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이트의 이윤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우리는 시장의 도덕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의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시장의 도덕성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당사자들이 공정한 게임, 즉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게임규칙, 즉 공정한 법의 확립과 그 개정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의 도덕성은 결국 공정한 법의 확립과 그 실행에 의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정한 게임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한다. 소위 당사자들이 불편 부담한 위치에서 규칙을 만들고 변경시켜야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서 규칙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리고 시장의 결과도 그에 따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한편 이데올로기의 논쟁에서 중심에 있는 이윤은 기업가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해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얻어지는 이윤은 반드시 노력이나 기여에만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당부분 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이윤 역시 도덕적으로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erlin, I.(1969),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pp.118-172.
- Brittan, S.(1995a), "Introduction", in *Market Capitalism and Moral Values: Proceedings of Section F(Economic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Keele 1993)(ed. by Brittan,S. & Hamlin,A.), Edward Elgar, pp.xi-xii.
- _____ (1995b), "Economics and Ethics", in *Market Capitalism and Moral Values: Proceedings of Section F(Economic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Keele 1993)(ed. by Brittan,S. & Hamlin,A.), Edward Elgar, pp.1-22.
- Buchanan, J. M.(1983), "Fairness, Hope, and Justice", in *New Directions in Economic Justice*(ed. by Skurski, R.),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53-89.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279-315.
- Burkitt, B.(1984), *Radical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the Alternative Economics*, Wheatsheaf Books Ltd.
- Cairns, J. W.(1994), "Adam Smith and the Role of the Courts in Securing Justice and Liberty", in *Adam Smith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ed. by Malloy, R. P. and Evensky, J.),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pp.31-61.
- Cowan, R. and Rizzo, M. J. (1995), "Fundamental Issues in the Justification of profits", in *Profits & Morality* (eds. by Cowan, R. and Rizzo, M. J.),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21.
- Feinberg, J.(1973), *Social Philosophy* (문창욱 역: 『사회철학』, 종로서적, 1992), Prentice-Hall.
- Frankena, W. K.(1973), *Ethics* (황경식 역: 『윤리학』, 종로서적, 1985), 2nd ed., Prentice-Hall.
- Hayek, F. A.(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II』, 자유기업센터, 1997), Routledge & Kegan Paul.
- High, J.(1982), "Alertness and Judgement: Comment on Kirzner", in *Method, Process, and Austrian Economics: Essays in Honor of Ludwig von Mises*(ed. by Kirzner, I. M.), Lexington Books, 1982, pp.161-68.
- Keynes, J. M.(1919),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Macmillan for the Royal Economic Society, 1971.
-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5), "The Nature of Profits: Some Economic Insights and Their Ethical Implications", in *Profits & Morality* (eds. by Cowan, R. and Rizzo, M. J.),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2-47.

Mill, J. S.(1859), *On Liberty*(김형철 역: 『자유론』, 서광사,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Nozick, R.(1973), "Distributive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3(1), Fall, pp.45-126.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pp.351-432.

Reekie, W. D.(1984), *Markets, Entrepreneurs and Liberty: An Austrian View of Capitalism*, Wheatsheaf Books.

Ricketts, M.(1992), "Kirzner's Theory of Entrepreneurship-A Critique", in *Austrian Economics: Tensions and New Directions*(ed. by Caldwell, B. J. & Boehm, 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pp.67-84.

Shand, A. H.(1984), *The Capitalist Alternative: an Introduction to Neo-Austrian Economics*, Wheatsheaf Books.

_____ (1990), *Free Market Morality*(이상호 역: 『자유시장의 도덕성』, 문예출판사, 1996), Routledge.

Taylor, P. W.(1975), *Principles of Ethics* (김영진 역: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 1990),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Taylor, R.(1967), "Determinism,"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ed. by Edwards, P.), vol.2, MacMillan, pp.359-73.

_____ (1983), *Metaphysics*(엄정식 역: 『형이상학』, 1988, 종로서적), 3rd ed., Prentice-Hall, Inc..